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가족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공실버복지회관을 신규 설치·운영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이용기준 및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복지회관 업무 규정(안 제3조)
- 노인복지회관 이용가능 연령 및 이용 제한 규정(안 제 5조)
- 노인복지회관 사용허가 규정(안 제 6조)
-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규정(안 제7조)
- 관계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2. 29.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2024. 3. 14.

2. 제안이유

-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공실버복지회관을 신규 설치·운영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이용기준 및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회관 업무 규정(안 제3조)
- 노인복지회관 이용가능 연령 및 이용 제한 규정(안 제 5조)
- 노인복지회관 사용허가 규정(안 제 6조)
-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규정(안 제7조)
- 관계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관내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이용)에서 복지회관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하되, 식당의 경우 공식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 안 제6조(사용허가) 및 제7조(사용료 등)에서 시설 사용 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 면제: 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 ②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③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안 제8조(위탁관리)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또는 영리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새로 규정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합하고 개정 사항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비용의 부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
----------	-----

제출년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중부고령자복지주택 내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을 신규 설치·운영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기타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이용기준 및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공공노인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노인복지회관 업무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다. 노인복지회관 시설분류를 현행화하여 정함(안 제4조)

라. 노인복지회관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가능 연령 확대 및 이용 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 5조)

마. 노인복지회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허가 규정을 정함(안 제 6조)

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규정을 정함(안 제 7조)

- 사. 위탁 운영 신청 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서 제출 규정을 정함(안 제8조)
- 아. 위탁 관리가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한 배상 불가 규정을 정함(안 제9조)
- 자.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년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자료 참고
- 나. 예산조치 : 붙임자료 참고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4.02.07. ~2024.02.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노인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 교양·취미활동 및 교육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3.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프로그램실
3. 휴게 공간
4. 건강증진실

5. 식당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 ① 이용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② 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 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4.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고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 ①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하“수탁자”라 하다)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성인 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8조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노인복지회관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4.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중지·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도감독 및 제11조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평창군노인복지회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	지하1층/ 지상3층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89, 1층	지상1층

[별표 2]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사용료	다목적 강당	1회 (2시간 이내)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프로그램실	1회 (2시간 이내)	10,000	
이용료	수강료	강의당	무료	○ 재료비 등 필요시 별도 수납
	식당	1식	3,500	
	건강증진실	-	무료	

[별표 3]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사용료 이용료	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u>이용개시일 3일전</u> 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으로 <u>이용개시일 1일전</u> 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5. 이용자의 사정으로 <u>이용개시일 당일</u> 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없음

시설 사용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신청인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small>(개인의 경우 생년월일)</small>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면제신청 여부 및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청(신청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p>「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p> <p>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p> <p>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시설)명,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p> <p>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div>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안 제8조제5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금은 균비로 운영되며,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연 1.7% 인상), 운영비(연 1.2% 인상) 등 소요 예산 항목별 적용
- 2024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지원 : 2개소, 3명
 - 운영시설 : 2개소(평창군노인복지회관 1,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1)
 - 운영인력 : 3명(평창군노인복지회관 1,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2)
 -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 2개소, 3명, 258,290천원
 - ※ 2024년 당초예산 노인복지회관 2개소, 183,000천원 편성
 - 【평창노인복지회관 위탁금 : 113,000천원】 ※ 2024년 당초예산 113,000천원 편성
 - 인건비 : 34,654천원×1명=34,654천원
 - 운영비 : 78,346천원×1개소=78,346천원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위탁금 : 145,290천원】 ※ 2024년 당초예산 70,000천원 편성
 - 인건비 : 20,220천원×2명=40,440천원
 - 운영비 : 104,850천원×1개소=104,850천원
- 2024년 1회 추경에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위탁금 75,290천원 증액 필요

나. 추계 결과

○ 세입 : 14,350천원

- 식당 이용료 : 3,500원×25명×164일×1개소=14,350천원

※ 식당 이용료는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에 한해 수입 발생

○ 세출 : 258,290천원

내역	산출기초(2024년)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258,290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노인복지회관(1명, 12개월) : 34,654천원 - 34,654천원×1명=34,654천원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2명, 8개월) : 40,440천원 - 20,220천원×2명=40,440천원 	75,094	군비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노인복지회관 : 78,346천원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 104,850천원 	183,196	군비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예산 편성

- 2024년 당초예산 일부 편성, 부족분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 212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4,350	14,350	14,350	14,350	14,350	71,750	
식당 이용료	14,350	14,350	14,350	14,350	14,350	71,750	
세 출	258,290	284,273	283,094	286,969	290,898	1,403,524	
인건비	75,094	98,879	95,475	97,098	98,749	465,295	
운영비	183,196	185,394	187,619	189,871	192,149	938,229	
재원 조달	258,290	284,273	283,094	286,969	290,898	1,403,52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기타						
자체 수입	소 계	258,290	284,273	283,094	286,969	290,898	1,403,524
	지방세						
	세외 수입						
	군비	258,290	284,273	283,094	286,969	290,898	1,403,524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